

## 2019년도 제2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22.(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19건(안전번호 제 2019-154030호~15408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4030호~제2019-154089호 419건의 게시물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이번 심의 건인 복제물은 방송 유령을 잡아라를 비롯하여 닥터 스톤, 그랑 메종 도쿄 등 일본 채널에서 방영중인 드라마들로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마땅함.

이러한 시정권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 어떠한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장 빠르게 저작권 침해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수 있음을 알려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임. 통상 심의기간동안 침해되고 있는 저작물의 노출기간이 가장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일 확률이 높기 때문임. 물론 이미 삭제되거나 전송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은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거나 이미 자체적 경고가 있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굳이 재경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임.

- C 위원 : 본 심의 회의에 상정된 60건 419개 게시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다. 채증 자료를 통해 불

때 위의 불법 복제물이 웹하드 등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다수에게 전송된 것이 확실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 D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19년 방영된 방송콘텐츠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방송 유령을 잡아라(2019), 방송 닥터 스톤(2019), 방송 청일전자 미쓰리(2019), 방송 그랑 메종 도쿄(2019), 방송 싸니다 천리마켓(2019)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제26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22.**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